

## (1) 내진성능평가 관련 법규 비교

구분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약칭:시설물안전법)	건축법	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(약칭:지진대책법)
주무부처	국토교통부	국토교통부	행정안전부
대상	시설물관리	건축물 설계·시공·감리·안전	지진재해대상 시설물의 설계·보강
주요내용	<p><b>[법]</b> 제2조(정의) 8. 내진성능평가 :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 14조 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‘내진설계기준’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.</p> <p>12. 성능평가 :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, 내구성,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.</p> <p>제12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 ③ 관리주체는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 14조 1항에 따른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 실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 인정시 권고.</p> <p>제40조(시설물의 성능평가) 한국시설안전공단,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성능평가 대행</p> <p>제43조(유지관리·성능평가 지침)</p> <p><b>[시행령]</b> 제9조(책임기술자의 자격) ①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(책임기술자)은 별표 5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. ②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「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토목·건축·안전관리분야의 초급기술자,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에게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음. ③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</p>	<p><b>[법]</b> 제48조(구조내력 등)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</p> <p>제48조의 2(건축물내진등급 설정)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, 규모 및 설계 구조에 따라 내진등급 설정</p> <p>제48조의 3(건축물의 내진능력공개) 1. 2층 이상(목구조 3층이상)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(목구조 500제곱미터)이상건축물</p> <p>제67조(관계전문기술자) 설계자와 감리자는 대지의 안전,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, 부속구조물의 건축설비 설치를 위한 설계, 감리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. 1. 「기술사법」제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. 2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 26조 건설 기술용역 등록한자. 3.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</p> <p><b>[시행령]</b> 제32조(구조 안전의 확인) :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.</p> <p>제32조의 2(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) ① 제91조의 3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 ② 구조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함.</p>	<p><b>[법]</b> 제14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) 관계중앙, 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.</p> <p>제15조(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시설물(기존시설물)의 내진성능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.</p> <p>제16조(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 등은 내진보강대책 수립, 촉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.</p> <p><b>[시행령]</b> 제10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) 제10조의 2(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) 제11조(내진보강대책 수립대상시설 및 방법 등)</p> <p><b>[시행규칙]</b> 제3조의 4(민간소유건축물의 내진보강지원신청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작성한 건축물내진성능 확인서 첨부 제출. 1. 「기술사법」상 2. 「시특법」 상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의 기술사 보유 3. 한국시설안전공단.</p>

구분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약칭:시설물안전법)	건축법	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(약칭:지진대책법)
주무부처	국토교통부	국토교통부	행정안전부
대상	시설물관리	건축물 설계·시공·감리·안전	지진재해대상 시설물의 설계·보강
주요내용	<p>하려는 사람은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‘정밀안전진단’ 또는 ‘성능평가교육’을 이수</p> <p>제10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 별표3, 성능평가 5년에 1회이상.</p> <p>제28조(시설물의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: 도로,철도, 항만, 댐 등)(별표13)</p> <p>제30조(유지관리·성능평가지침) 유지관리·성능평가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</p> <p>제31조(성능평가비용의 산정기준)</p> <p><b>[시행규칙]</b> 제 10조 성능평가교육 : 14시간 이상</p> <p><b>[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]</b> (고시 제 2016-807호, 2018.1.18.) 제2조(용어의정의) 성능평가(종합평가) 안전성능+내구성능+사용성능 종합평가</p> <p>제 41조(성능평가실시자의 자격) ① 성능평가책임기술자는 제14조 1항,2항 준용. 이 경우“안전점검”등은 “성능평가”로 봄. a.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 b. 해당분야(교량및터널,수리,항만,건축)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그 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2년 이상 수행 c. 해당분야 성능평가 교육 이수.</p> <p>② 성능평가 참여기술자는 제14조3항 준용. 이 경우 “정밀안전진단”은 “성능평가”로 봄.</p>	<p>③다음 건축물 설계자는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함. 1. 6층이상건축물 2. 특수구조건축물 3. 다중이용건축물 4. 준다중이용건축물</p> <p><b>[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]</b> 제57조(구조설계도서의 작성): 건축구조 기준에 따름</p> <p>제58조(구조안전확인서 제출) 1. 6층 이상 건축물 2.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</p> <p>제60조의2(건축물의 내진능력) 산정기준 및 공개방법 ① 산정기준 별표13 ② 내진능력산정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제출. ③ 내진능력 건축물대장 기재.</p> <p>제61조(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)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I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함.</p> <p><b>[건축구조기준]</b> (국토교통부 2016.5 고시) (고시 제 2016-317호) 0107.1 책임 구조기술자의 자격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, 시공, 감리, 안전진단 등 관련업무를 각각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,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관련법령에 따른 (해설) 건축구조기술사도 해당 업무부분에 책임구조기술자가 짐.</p>	

붙임: (1) 「시설물안전법」시행령[별표5]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
(2) 「건설기술진흥법」시행령[별표1] 건설기술자의 범위